이탈리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이탈리아 공화국(Italian Republic)
2. 수도 : 로마(Rome, 264만명)
3. 인구・면적 : 6,067만명(2015년), 302,072㎢(한반도의 약 1.4배)
4. 공용어 : 이탈리아어
5. 1인당 GDP : 29,884불(2015년)
6. 독립일 : 1861. 3. 17.(이탈리아 왕국 선포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내각책임제, 양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Italian Republic

2. 연혁

○ 1947. 공화국 헌법 제정(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규정)

○ 1953. 헌법재판소법과 기타 법률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 완성

○ 1955.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

○ 1956. 4. 헌법재판소의 최초 변론 실시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, 부소장(Vice-President) 포함 15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대통령, 국회(양원 합동회의) 및 사법부(대법관 3인, 국가자문위원회 1인, 회계감사원 1인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

회)에서 각각 5인씩 선출

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, 중임 불가

○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, 임기는 3년임

○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 부재 시 헌법재판소장을 대행

-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부재 시 가장 임기가 오래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에 따라 부소장 대행을 한다.

○ 재판관 자격

- 대법원, 국가자문위원회(행정재판소 해당) 또는 회계감사원의 전・현직 재판관
- 법학교수
- 2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
- 나이 상한제한은 없음

4. 권한

○ 법령(법률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법규명령)의 위헌여부심판

○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,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

○ 대통령 탄핵심판

○ 국민의 법령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 요구의 합헌성 심판

-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500,000명 이상의 선거권자나 5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법령(세법, 예산법, 국제조약 비준법률 및 사면법을 제외)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

5. 심리 및 결정

○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소 11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부의 판

결로 결정됨

○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만이 청구

○ 사건의 심리는 주요 사건의 경우 변론(public hearing)을 행하고 경미한 사건은 비공개 평의(closed session)만을 거쳐 결정(변론을 행하는 사건은 전체사건의 약 1/3 정도임)

○ 헌법재판소장은 사건별로 주심(rapporteur)재판관을 지정하며, 주심재판관은 평의에서의 사건 보고 및 결정문 작성 등을 담당

○ 심판사건의 결정문은 재판관 전원이 합의(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)한 단일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며, 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을 표시할 수 없고 찬반 재판관 인원수의 공개도 금지

○ 다수 재판관과 의견을 달리하여도 원칙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

○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과 더불어 상원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출한 16명의 일반국민이 함께 결정

6. 기타사항

○ 사무처장 이하 350여명의 직원들이 재판부를 보좌하며, 사무처는 예산 및 직무상의 독립성을 가짐

7. 연락처

○ 주　　소 : Piazza del Quirinale
41 - 00187, Roma
ITALY

○ 전화번호 : +39 6 46 981

○ 팩스번호 : +39 6 46 98 916

○ 이메일 : info@cortecostituzionale.it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cortecostituzionale.it/

※출처: 외교부

이탈리아 헌법

베니스위원회 CODICES

(2017. 12. 작성)